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8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27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옥상녹화 협약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 골자

- 협약기간 5년 단위 연장 규정 및 단서조항 신설(안 제10조제3항)
-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협력 부분 수정(안 제10조제4항)
- “협약기간을 연장한”을 “협약기간 내”로 수정(안 제11조제4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5년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”를 “관리책임자”로 한다.

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안 제11조제4항 중 “협약기간을 연장한”을 “협약기간 내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옥상녹화 협약서 체결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·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옥상녹화 협약서 체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신 설></p> <p>③ ----- ----- 하되 5년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0조(옥상녹화 협약서 체결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관리책임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<u>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협약기간 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”을 “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약서의 내용은”을 “협약서는”으로, “정하여 체결한다”를 “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관리책임자”를 “관리책임자”로 한다.

-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안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 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안 제12조의 제목 “(시설 점검)”을 “(시설점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시설점검)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통해 유지·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 대장(이하 “관리대장”이라 한다)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.

안 별표 2 제3호 중 “80%”를 “60%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업 추진 및 지원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업 추진 및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지원대상 및 절차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제3항의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</u>는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6조(지원대상 및 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7조(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자</u>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옥상녹화 분야에 <u>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</u> 사람</p>	<p>제7조(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</u> ----- -----</p>
<p>제10조(옥상녹화 협약서 체결) ① (생 략)</p>	<p>제10조(옥상녹화 협약서 체결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·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시설 점검)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·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

② 협약서는 -----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관리책임자-----

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설점검)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·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옥

대장(이하 “관리대장”이라 한다)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기록·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상록화 관리대장(이하 “관리대장”이라 한다)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.